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2) 2123-4065 FAX: (+82-2) 364-9149

E-mail: [yeri4065@yonsei.ac.kr](mailto:yeri4065@yonsei.ac.kr)

<http://veri.yonsei.ac.kr/new>

한국경제사회의 경쟁, 독점, 공정성: 시장과 시험장을 중심으로

홍훈

October 2012

2012 RWP-46

**Economic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 초록 -

이 글은 한국사회경제에서 소극적인 공정성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우선 경제학의 관점에서 근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공정성의 기준으로, 기회의 균등, 경쟁의 공정성,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이어 이 기준들로는 한국의 시장과 시험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공정성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기준에는 소득과 재산의 차이, 평가기준의 내용, 결과가 아닌 과정, 경쟁의 장이 지닌 성격, 경쟁의 단위, 개인과 사회의 간격 등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주제어: 경쟁, 소극적인 공정성, 적극적인 공정성, 시장, 시험장

어떤 체제나 이념을 표방하든 모든 사회는 공정성(fairness)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근대사회에서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경쟁과 관련된다. 이와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역사와 사회의 특징이 결합되어 한국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는 시장과 시험장에서 등장한다. 동시에 여기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독점의 가능성이 문제된다. 최근 여러 정당들이 선거에 즈음해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무관하게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공정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사회에서 생기는 경쟁, 독점,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영미사상의 공정성의 기준이 주로 시장과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시장과 시험장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런 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지적했다.

이 글의 기조는 개인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결과나 상태만으로 경쟁, 독점, 공정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동태적인 과정과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관계에 대한 의존성과 집단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형식적인 공정성의 기준

공정성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프랑스혁명으로 신분이 타파된 서양의 근대사회, 그리고 이에 근거한 동서양의 근대사회에서 공정성은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등장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모두 이런 동등한 개인들을 전제로 한다. 동등한 사람들이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라 여러 장(장)에 참여해, 권력, 돈, 명예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이다.

1) 이 글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구역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065).

이런 장(a level playing field)으로는 시장(市場), 토론장(討論場), 광장(廣場, forum), 선거장(選舉場), 시험장(試驗場), 경매장(競賣場), 경기장(競技場), 경연장(競演場), “재판장”(裁判場), 공장(工場)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나 독점은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공정하게 배분 혹은 분배하려면 객관적인 평가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험장을 위시한 여러 장에서 영미사회에서 내세우고 경제학을 위시한 영미사회과학과 사회사상이 뒷받침하는 공정성은 기회, 경쟁, 평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Friedman, 1982 참조).

첫째, 모든 사람들이 종교, 성별, 연령, 지역, 가문 등에 관계없이 사회의 여러 장에 참여한다. 이는 사전적인 배제를 금지하는 기회의 균등으로 규정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회의 균등을 일찍부터 표방해 왔다. 이런 기회의 균등이 일차적으로 서양사상이 내세우는 사회의 공정성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근대의 교육체제는 모두 물건이나 사람들을 적어도 국가나 국가수준의 시장으로 끌어들이므로 기회의 균등이나 사전적인 의미의 평등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

귀족이나 양반, 평민, 천민의 구분 없이 누구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공직에 나설 수 있고,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할 수 있으며, 대학에 응시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이조시대의 서당과 현대의 학교, 이조의 과거시험과 현대의 입학시험이나 공무원시험, 시골장터와 슈퍼마켓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과거시험에서 평민이나 천민을 배제하는 것이나 과거 미국에서 흑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것 등은 장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기회균등에 위배된다.

둘째, 어떤 장에서나 참여자들이 벌이는 경쟁에는 준수할 규칙과 규범이 정해져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장마다 규칙의 내용은 다르지만, 규칙이 없는 장은 없으며, 이런 규칙을 시행하는 관리자가 있다. 가령, 시장의 법과 정부, 입시장의 시험관, 경기장의 심판관, 법원의 판사는 이에 해당된다. 시장이든 시험장이든 경기장이든 규칙은 모두 참여자들 사이의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주로 계약과 관련해 등장하는 강박이나 사기의 배제는 일반적인 규칙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강제하거나 물건의 질과 양을 속히는 일은 위법이다.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는 사기에 해당된다. 육상 경기장에서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출전하는 것도 규칙위반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의 규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모든 규칙은 제정이나 적용에 있어 추상성과 익명성을 띠어야 공정성을 유지한다. 임의 x에 대해 그것의 인적인 속성과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이에 부합된다. 눈을 가렸으니 인종, 종교, 국적, 성별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이에크(F. A. v. Hayek) 같은 사람은 이것이 시장자유주의의 근간이라고 역설해 왔다.

셋째, 여러 장에서는 지위와 보수를 분배하기 위해 참여자들을 평가한다. 능력과 실적이 다른 사람들과 가치나 모양이 다른 제품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위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La carrière ouverte aux talents*)에서 능력주의에 부합된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차등적인 결과를 허용한다. 공직에 나서더라도 공정한 선거나 객관적인 인사고과를 거쳐 임명되고, 시장에서 얻는 이윤은 사람마다 다르며,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는 못한다. 그렇더라도 그리고 설정된 평가의 기준과 평가의 결과를 참여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의 가격을 위시해 어떤 장에서의 가치(value)나 평가(e/valuation)는 질적인 동일성에 근거해 동일평면에서 설정되는 비교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메트릭(metric)으로 환원하는 통약(commensuration)을 거치게 된다(Espeland & Stevens, 1998 pp. 314-318). 통약은 이질적인 여러 대상들의 차원이나 속성들을 동일한 기준이나 잣대로 환원하고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나 대상들은 하나의 수량으로 표시된 소득이나 가격, 점수, 벌금이나 형량을 얻게 된다(Posner, 2004, pp. 70-71; 홍 훈, 2010).

예로서, 책 1권 = 사과 10개 = 돈 1만원의 교환등식에서는 가치가 공통의 질이나 차원이 다. 시장에서는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통약의 과정이다. 그렇지만 통약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책상 = 1학생이라면, 높이나 신장이 공통의 차원이다. 이것은 저울에 올려 무게를 기준으로 물체들을 비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투표나 각종 시험, 운동경기나 경연, 그림이나 도자기에 대한 감정 등에서도 통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험점수도 통약의 결과이다. 가령, 학생들을 평가하고 대학합격여부를 가리기 위해,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이를 모두 합산해, 하나의 점수로 표현한다. 영희는 100점이고, 철수와 태수가 50점이라면, 한국인들이 흔히 즐기듯이, 영희 > 철수 ~ 태수라는 서열이나 등수가 나온다. 또한 시장의 교환에 가깝게 만들면, 영희 = 2철수 = 2태수 = 철수 + 태수. 철수와 태수는 그 가치가 모두 영희의 반이다. 이렇게 보면, 학생의 점수와 시장의 가격은 비슷하며, 채점의 단위는 화폐의 단위와 비슷하다.

양형도 이와 비슷하다. 정의의 여신은 죄의 무게를 달아 형을 언도함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한다. 이는 천칭에 무게를 달아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것과 비슷하다.<sup>2)</sup>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면 고을이나 수령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익명적인 기준이 등장한다. 흔히 두 명 이상의 인간이 관련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판사는 사과이나 책과 같은 재화나 자원의 가치를 비교하는 소비자보다 복잡한 판단과 계산을 해야 있다.<sup>3)</sup> 또한 소비자나 생산자가 선수이고 시장의 가격이나 정부가 심판관이라면, 재판관은 그자체로 심판관이다. 그렇더라도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판결은 비슷하다.<sup>4)</sup>

기회의 균등은 모종의 동등성이나 평등을 전제하므로 등식(equality)이나 방정식(equation)과 등가(equivalence)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통약이 요구하는 수량적인 측정에도 등식이나 등가성이 전제된다, 무엇이 같은지를 설정해야 더하고 덜한 것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교환도 객관적인 등가에 의존해 등식으로 표현된다. 가령, 사과 10개 = 책 1권 = 돈 3만원. 경제학의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도 개인의 주관에 의존하지만 등가성을 담고 있다. 이는 효용함수나 쉼씨화씨 등의 온도를 측정할 때 0이라는 기준점을 설정하는데 해당된다.

통약이 질적인 동일성을 확보해 사물들의 다름을 양적인 차이로 환원하고 환산하므로 수학이나 통계학, 그리고 회계학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의 장(number field)은

2) 대영 박물관의 화폐전시관에 놓인 고대의 화폐 중에는 천칭 모양의 화폐도 있다.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화폐라고 보면, 저울, 화폐, 양형은 밀리 떨어져 있지 않다.

3) 신고전학과에 비판적인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 불완전해서 재화나 진료방법뿐만 아니라 형량의 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Kelman et al., 1996; Mark et al., 1996). 인간의 선택대상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관계나 맥락을 형성해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택의 대안으로 끼어들면서 중간의 형량이 가혹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형량으로 선택이 몰린다. 이런 이유로 사심이 없는 판사나 배심원이라도 수시로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최근에는 법률과 윤리의 변동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대한 흐름이 생겼다(Posner, 2004). 반면 신고전학과와 법경제학이 연속적이고 수량적인 현상에 국한해 유효한 비용편익분석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완벽한 시장 및 가격기구를 상정하는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Sen, 2000; Frank, 2000; Gneezy & Rustichini, 2000).

통약을 전제로 한다. 이는 학문과 숫자의 힘을 보여준다. 통계수치나 학생의 점수가 객관적인 숫자에 대한 신뢰가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숫자에 의존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서양에서 근대성과 합리성을 대표한다. 복식부기에서 서양의 합리성을 발견하고 설명하는(*Accounting for Rationality*) 근거도 여기에 있다(Carruthers & Espeland, 1991).

통약을 통한 평가에 따라 사회의 권력, 소득, 명예나 새로운 신분이 나뉜다. 이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각 부문에서 이런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원을 투입한다. 쉽게 말해, 근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점수를 높게 받으며, 형벌이나 벌금을 적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게 된다.

정리하면, 시장, 시험장, 재판장 등에서도 모두 여러 사회구성원들을 동일한 장으로 끌어 들여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평가에는 특징 기준에 근거한 표준화나 수량화가 수반된다. 이는 봉건적인 신분이나 성별 등에 대한 타파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근대적인 이념을 이식하는 과정이다. 한반도, 적어도 남한에서 이 과정이 개항이후 1세기이상 적어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5)</sup>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런 영미사상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은 절차나 형식을 강조하면서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규정을 각 개인이나 각 영역에 맡긴다. 이것이 자유주의자 하이에크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방책이다(홍 훈, 2009, 267-284쪽). 경쟁이나 평가의 가치, 목표, 내용에 중점을 두지 않으므로. 이것을 경제사회체제의 형식적인 합리성이나 소극적인 공정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소극적인 공정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등식에 포함된 동등성이나 평등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분타파를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남한을 지배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손쉬운 근거이다. 이것은 개항 이래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해방이후에 직접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사상이나 이론이다. 살인적인 절차적 합리성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학시험에서 이것을 실감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인 합리성이나 공정성은 내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적극적으로는 비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결합되어 있는 시장과 시험장에서 이런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시장과 시험장에서 영미사상이 제시하는 공정성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이것이 실질적이거나 적극적인 공정성이 되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시장과 공장에서의 공정성

### 2.1 시장의 거래와 계약

공정성은 평등이나 형평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모종의 동등함을 상정한다. 경제학과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고 자유나 자율성과 친해도, 평등과는 별로 친하지 않다(홍 훈, 1994). 그렇더라도 시장경제에 평등성이나 공평함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다.

우선 시장경제도 이미 언급한 기회의 균등, 경쟁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을 전제로 삼는다. 그러면서도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에 비해 유난히 개인이 지니는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Friedman, 1982; Markus & Schwartz, 2010). 이에 따라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인간의 동등성을 다른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개인들이 지니는 선택의 자유에서

5) 우리나라의 개항기에 사각모자를 쓰고 망토를 걸친 대학생이 서당에서 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찾는다.

경제학은 이에 근거해 시장의 경제현상을 설명한다.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경제활동으로 나누고 주된 경제활동을 교환을 생각하는데, 교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두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나서 생겨난다. 또한 경제학이 경제활동 중에서 생산, 소비, 분배보다 교환을 중시하는 이유도 교환이 개인의 선택에 가장 잘 부합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고전학파가 상정하는 시장경제의 공정성은 생산, 소비, 특히 분배의 공정성보다 교환이나 거래의 공정성으로 나타난다.<sup>6)</sup> 계약이 거래의 법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이는 계약의 공정성이기도 하다. 근대서양사회를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이행으로 규정한 메인(T. S. Maine, 1861)은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이에 부합되는 법학은 인간의 동등성과 사회의 공정성을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들 사이의 교환 및 계약과 연결시켰다.

그런데 로크(J. Locke), 스미스(A. Smith), 리카도(D. Ricardo) 등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동등성이나 경제의 공정성을 이와 달리 생각했다. 원래 경제학은 정치의 장이나 토론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상품이나 재화가 대상이라는데 중점을 둔다. 서비스도 있지만 유형적인 상품이나 재화가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 경제학은 거래당사자들의 동등성이 거래되는 상품이나 재화의 동등성에 표현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품이나 재화는 단순히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생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동등성은 일차적으로 각자의 재산이 동등하게 존중된다는 의미가 된다. 초기경제학은 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이 노동생산물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생산한 노동의 동등성을 내세웠다. 마르크스(K. Marx)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프랑크혁명이후로 신분이 타파되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정신이 동등하고, 각자의 사유재산이 동등하며, 노동과 생산물이 동등했다.

교환의 공정성도 상품시장에서 동등한 가치의 물건들, 즉 등가물들이 교환된다는 데서 찾았다. 등가물이 교환되지 않으면 거래의 당사자들도 동등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도 공정하지 않은 된다. 이 논리는 상품의 가치가 상품자체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에 포함된 노동가치나 생산비용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의 객관적인 가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업체계 하에서 각자가 원하는 생필품을 얻기 위해 사용가치가 다르면서도 동일한 양의 가치를 교환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가 다른 옷과 사과가 동일량의 가치로 교환되어 옷 1벌=사과 20개가 마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전혀 다른 사용가치나 물체에서 동일한 그 무엇을 찾아 양적으로 측정하는 일이 여기에 수반된다. 이는 전혀 다른 물체들의 무게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일과 외형상 다르지 않다. 나아가 누구를 불구로 만든 상해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전혀 다른 형벌을 등치시키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사상이 등장하면서 등가물의 교환이라는 생각과 이에 근거한 공정성은 변화를 겪었다. 1871년부터 등장한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인 가치이론에 의하면, 재화나 상품은 소유물에 불과해서 반드시 노동의 생산물일 필요가 없다. 더구나 특정 재화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각기 다르다. 객관적 가치이론과 달리 이 입장에서는 교환이 동일한 재화에 대해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

6)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정의를 내세웠다. 분배적 정의에서 평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지위, 보수, 명예를 지급하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비례적인 분배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그는 당사자들 사이에 손해보상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교정적 정의를 내세웠다.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교환의 합리성은 공정성(公正性)으로, 분배의 합리성은 공평성(公平性)으로, 표현이 구분되는 것 같다.

므로, 더 이상 등가물들의 교환을 상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옷 1벌을 가지고 있는 교환의 당사자 갑은 옷 1벌보다 사과 20개를 높게 평가한다. 사과 20개를 가지고 있는 을은 반대로 사과 20개보다 옷 1벌을 높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령, 갑에게는 옷 1벌=사과 15개<사과 20개이고, 을에게는 옷 1벌=사과 25개>사과 20개이다. 여기서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체들에 가치의 동등성을 부여할 수 없다.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자인 갑과 을에게 자발적인 선택의 주체로서 동등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제부터 각자가 특정 재화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동등성은 교환의 대상자체가 아니라 교환비율로 나타난다. 갑과 을의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교환비율 혹은 교역조건( $r$ )이 1:15와 1:25 사이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변호사이자 경제학인 에지워스(F. Y. Edgeworth, 1881)가 계약곡선(contract curve) 등을 통해 주장한 바이다.

$15 < r < 25$ 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이유는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교환이고 계약이기 때문이다. 만약  $r < 15$  혹은  $r > 25$ 이면,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도 거래가 진행되므로, 사기나 강박이 작용한 셈이다. 홉스(T. Hobbes)나 루소(J. J. Rousseau)가 강조했던 사회계약뿐만 아니라 시장의 개별적인 계약도 동등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근거한다. 동등성과 자발성으로 인해 교환과 계약이 공정성을 얻는다. 동시에 사기나 강박은 이런 공정성을 해친다. 이 같이 시장에서의 공정성은 교환이라는 경제적인 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계약에 담기게 된다.

이에 비해 경제학은 교환으로부터 얻은 잉여를 당사자들이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공정성을 논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교환비율이나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여타 시장이나 시장이외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전자에서 교환의 공정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로 실현된다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수요공급, 완전경쟁, 이에 따른 시장의 균형이 공정성이나 정의를 실현한다. 시장의 균형가격이 정의로운 가격이고 시장의 균형이 정의를 체현한다. 이 같이 경제학은 정의나 공정성을 상당부분 균형으로 대체했다. 그러므로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사상에 균형이나 균형가격은 있어도 정의나 정의로운 가격은 없다. 또한 공정한 거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공정한 가격은 없다. 이는 시장의 경쟁과 완벽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경제학의 입장에서조차 시장과 시장의 경쟁이 불완전할수록 시장이 불완전하면 시장의 경쟁이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므로 시장의 균형이 그자체로 정당하지 않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따라 1:15와 1:25사이 혹은 [옷 1만5천원/사과 1천원]과 [옷 2만5천원/사과 1천원] 사이에서 교환비율이 결정된다. 완전경쟁이나 완전한 시장에서는 시장의 교환비율이 교환을 통해 발생한 잉여나 부가가치를 나누는 공정한 비율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장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협상력 등에 의존해 잉여가 분배된다. 이에 대해 공정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균형가격이나 한계개념과 독립적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선택과 교환이 부각되면서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이며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진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모두 합리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선택의 범위가 달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일인일표’인데 비해, 자본주의는 ‘일불일표’라는 대비는 이미 오래되었다(홍 훈, 1992).<sup>7)</sup> 여기서 민주주의가 자율성과 형평성

7) 구매를 투표나 발언에 비유하는 것은 상거래를 투표만큼 거룩하게 만들어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와, 그리고 소비자주권을 시민의 주권과, 동급으로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경제학의 이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이기도 하다. 주주총회는 지분에 따라 투표권과 발언권을 부여한다.

을 추구한다면, 시장경제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홍 훈, 1994). 이 때문에 과도한 소득의 불평등은 생계를 위협하고 자유나 자긍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나 아기의 매매나 대리모와 매춘을 낳을 수도 있다(Sandel, 1998).

이 경우 선택이나 계약이 자발적이어서 강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강박을 받는 것이다. 보수적인 사상은 타인으로부터의 강제나 구속을 강조할 뿐 돈이 가하는 강제나 구속은 논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강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거래의 공정성이나 사회의 정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 시장주의자와 시장의 비판자는 통약의 범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통약을 넓게 인정하는 측에서는 인간이나 사물이 지닌 여러 가치나 선들 사이에 상하나 우열을 두지 않고, 시장이나 시험장에서와 같이 이들을 하나의 척도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화는 세계시장에 모든 것이 거래되고 통약되는 상황을 이상으로 삼는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롤즈(J. Rawls), 누스바움(M. Nussbaum), 센(A. Sen)에 이르는 비판자들은 여러 가치들 사이에 우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환원하기 힘들다고 본다. 자유나 자존이나 평등은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효율은 이보다 낮은 가치이다. 또한 정신이 육체보다 위에 있고, 재화나 서비스 혹은 화폐 등 물질은 정신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Dworkin, 1980).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가격 등과 같이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데 반대하면서, 영역마다 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과와 그림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평가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해서 수량화하고 서열이나 순서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학생들의 인지능력이 다차원적이어서 모두 하나의 잣대로 그 학업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의문시 된다. 노동자에 대한 인사과에서도 이들의 업무능력을 수량적인 지표로 된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교환이나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소득의 차이와 별개의 우열이나 비대칭성(asymmetry)이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재화) 혹은 상품의 소유자보다 화폐나 화폐의 소유자가 우위에 있다.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 엄청난 기술발전으로 생산력이 높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다기 보다 화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케인즈(J. M. Keynes)가 이를 지적한데 비해, 주류경제학은 화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세이(J. B. Say)에 따라 물물교환을 화폐적인 교환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sup>8)</sup> 이에 대해 합의가 없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화폐의 소유자인 발주자와 입찰 및 납품업체인 수주자 사이의 우열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국의 계약관계에서 전자는 갑이고 후자는 을이며, 갑과 을 사이에는 우열과 순서가 있다. 이 점에서 갑을관계는 형제관계나 선후배관계와 비슷하다. 서양의 형제에는 이런 우열이 담겨 있지 않다.<sup>9)</sup>

8) 화폐에 대한 경시와 긍정이나 정부의 통화남발에 대한 적개심은 주류경제학에 뿌리 깊다. 다른 한편 20세기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는 돈이 유동성을 지니고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므로 재화는 물론이고 장학증서, 식품 교환권, 상품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신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정해진 가치의 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의 특정 재화보다 일반적으로 더 낫다. 그렇지만 이 입장에서 이것을 화폐(소유자)와 상품(소유자)의 객관적인 우열로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9) 한국의 민법이나 상법 책에서는 계약관계를 예시할 때 갑으로 호칭하지만 우열을 상징하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미국인은 동생의 제3자에게 자신의 형이나 누나를 이름으로 지칭하는데, 한국인에게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 미국인에게 형이나 누나와 동생의 구분은 관심거리가 아니다. 가령, 경제학계에서 새뮤얼슨과 래리 서머스의 아버지가 형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



동양과 한국사회에는 집단성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인간관계가 지배하고 있다(Triandis, 1989; Markus & Kitayama, 1991, 2010). 이것이 계약관계에 결합되면서 이런 우열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익명적인 시장의 일회적이고 단기적이며 몫이 적은 거래에서보다 재화나 자산의 특정성이 높고 장기적이며 거래의 몫이 큰 경우에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당사자들 사이의 동등성을 실질적으로 약화시켜 교환과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2.2 불완전 계약과 노동추출

재화가 아니라 노동력을 대상으로 삼는 계약에는 보다 많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수반된다. 재화도 소비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드러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내구재의 경우 사용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성능이나 수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모를 뿐 재화의 성능이나 기능은 일정범위 내로 주어져 있다. 이에 비해 기업이론에서 인정하듯이,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노동력은 관리하기에 따라 산출이나 실적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런 가변성을 지니기 때문에 제품과 같이 단순히 불량여부로 노동력을 규정할 수 없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재화와 같이 주어진 사물의 거래에 중점을 두고 공리주의의 영향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가변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력을 재화와 같이 취급하고 생산과정의 가변성을 무시하려면 내구재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고용계약에 회사와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리, 감시, 노동강도의 변동, 태업, 회피, 저항 등 가변적인 정황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완전한 계약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데 대해 이제 이견이 별로 없다.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이나 이행비용의 발생은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 거래와 계약의 불완전성을 담고 있다(Ayres & Gertner, 1989; Tirole, 1999). 불완전계약은 보수적인 사회과학과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바와 달리 계약이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이나 법에 있어 관습적이고 묵시적인 전제에 근거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nstein, 2001a, 2001b, 2002).

노동력의 가변성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선구자는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하면서 생산과정에서의 착취를 주장한 마르크스이다.<sup>10)</sup> 이런 이유로 그는 계약의 절차적 공정성이 허구라는 점을 일관되게 내세웠다. 현대의 기업이론도 착취는 인정하지 않지만 노동이나 노력의 추출은 인정한다(홍 훈, 1998).

그렇다면 노동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노동법규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이나 거래라도 그 자체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회사나 공장에서 관리를 받으며 일해서 얻은 잉여의 분배에 대해 계약서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태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노동시장의 교환자체에 대해 공정성을 따지는 데는 한계가 드러난다. 보다 동태적이고 생산과정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 인간관계에 개입되고 집단이나 조직전체수준에서 활동이 진행되는 한국의 기업에서는 생산과정의 결과가 더욱 가변적이다(Markus & Kitayama, 1991; 홍 훈, 2012). 우선 노동

없을 정도이다.

10) 마르크스는 교환과 계약의 표면적인 합리성에 숨겨진 공장의 착취를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는 베버(M. Weber)가 내세운 형식적인 합리성과 실체적인 합리성의 구분과 형식적인 합리성에 대한 강조를 비판했다(Lewis, 1975). 신고전학파는 베버보다 더욱 형식적인 합리성에 집착하므로 마르크스와 보다 확실하게 대립된다.

자나 직원들은 단순히 동원이나 외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 상당부분 내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더불어 집단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집단적인 의식이나 움직임이 중요하다. 나아가 대통령이나 관료, 그리고 재벌의 총수 등 카리스마적이거나 변형적인 지도자의 영향력이 여기에 추가된다(Bass, 1990; Shamir et al., 1993).

이 같이 내적인 동기, 집단적인 의식,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역량이 결합되어 한국기업의 노동과정과 그것의 결과는 그 변동의 폭이 크다.<sup>11)</sup> 이로 인해 사주와 종업원들 사이에 잉여를 분배하는 기준도 애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적인 합리성이나 교환의 형식적인 공정성에 의존하기는 더욱 힘들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전제할 때 영미자본주의에서 독일이나 일본의 자본주의에서는 계약이 언제나 더 불완전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홍 훈, 1999). 한국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묵시적인 계약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할수록 충성심, 헌신, 호혜성 등이 부각되면서 명시적인 계약보다 심리적인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이나 내포된 계약(implied contract) 등의 역할이 커진다(Rousseau, 1989). 당연히 서양의 기준으로 담합이라고 부를만한 행위들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는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와 같이 장기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관계에서 비롯된다.<sup>12)</sup> 장기적인 호혜성에 근거한 선물주기도 이에 부합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는 개인이 지닌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 교환과 계약도 이런 선택의 자유가 두 사람 사이에 합치되어 나타난다. 노동계약도 노동자의 선택과 자본가의 선택이 합치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경제학은 생각한다. 기업과 기업의 사장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노예나 농노 혹은 하인과 달리 특정인에게 속박되지 않는다. 이 같이 노예와 노동자의 구분은 형식적인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의존한다.

논리적으로 노예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보유한 인간자체가 상품이고 신체적인 자유를 지니지 않는다. 이에 비해 노동자는 인간자체가 아니라 노동력이 상품이어서 신체적인 자유를 유지한다. 노예의 노동력은 저량으로 매매되는데 비해, 노동자는 노동력을 매 시점에서 서비스라는 유량으로 바꾸어 매매할 수 있다. 노예와 달리 노동자가 이같이 직업이나 기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노동거래와 계약은 절차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닌다. 나아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현물이 아니라 화폐임금을 받아 이에 대해 소비자로서 선택의 자유도 누린다.

그러나 실질적인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따지면, 노예와 노동자의 구분은 흐려진다. 노동자도 특정인에게 묶이지 않지만 누군가에는 묶이며 돈과 자본에는 확연하게 묶인다. 여기서 제기되는 노동자를 위시한 사회구성원들이 돈이나 자본에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나 사주에게 인적으로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의문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이 과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합당하고 공정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화로 인해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신체와 재산에 대한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쉽게 말해, 사유재산, 화폐, 자본의 힘이 신체의 존엄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해졌

11) 한국의 축구경기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강한 팀에 강하고 약한 팀에 약하다는 평가가 가변성을 말해 준다. 외국인 히딩크감독을 떠올리게 하는 2002년 서울월드컵경기, 홍명보감독의 2012년 올림픽경기 등도 이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12)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부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지식에 대비되는 암묵적인 지식과 지역의 지식에 부합된다. 암묵적인 지식은 진화경제학과 지식경영, 경제지리학에서 부각되고 있다(Nelson & Winter, 1982; Nonaka, 2007). 또한 묵시적인 계약과 암묵적인 지식은 조항이나 상황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서양의 분석적인 인식보다 동양의 총체적인 인식에 합치된다(Nisbett et al., 2001).

다. 장기매매, 아기매매, 매춘, 인터넷을 통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상품화는 이를 말해준다. 경제학이 강조하는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사회학이 강조하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도 모든 것을 자본으로 변화시키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비중증가로 노동의 결과인 유형화된 재화가 아니라 감정이나 표정을 판매해야 일이 빈번해지면서 노동자와 노예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홍 훈, 2011). 연예인들의 노출이나 일반인들이 입시면접이나 채용면접에서 보이는 표정이나 감정관리, 용모교정이나 미용수술과 성형수술 등은 모두 이에 부합된다.

물적인 관계와 인적인 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한국의 장기적인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보다 복잡해진다(홍 훈, 1999).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장과 간부, 상관과 부하,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 등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서양사상의 구분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경제학이 말하는 선택을 중요하게 만드는 단기적인 관계와 이동성이 언제나 사람들의 자유와 효율성을 제고하는지도 의심하게 만든다.

### 2.3 수출경쟁과 차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수출경쟁에도 집단적이고 관계적이며, 내적인 동기에 호소하고, 변형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존했다는 특징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과 경제관료가 기업들을 계도하고, 차별 총수가 사원이나 노동자들에게 지도자로 군림했다. 이에 따라 수출목표가 기업이라는 집단전체에 부과되며, 기술혁신 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sup>13)</sup>

기업전체가 하나의 경쟁단위로 여타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과 경쟁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쟁의 주체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 혹은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들로 분해되지 않는 하나의 조직이자 집단으로 기능했음을 뜻한다.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에 의존하며 영미사상과 경제학은 방법론적인 개체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가 개인을 구성단위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와 경제학은 개인을 교환, 계약 그리고 경쟁의 단위로 삼는다. 이와 관련된 공정성의 기준도 개인을 단위로 삼는다. 이렇게 설정된 공정성의 기준을 한국의 기업이라는 조직이나 집단에 적용할 경우 정부와 기업의 관계나 기업 내의 집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변치 않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지도자와 추종자의 역할 변동 등이 경쟁력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기업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차별에 소속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경쟁도 불공정하다. 차별기업은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등 계열기업들 사이의 출자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다른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다. 이들은 하도급관계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항목을 이루고 있다.

이 문제들도 경쟁의 단위와 주체와 관련된다. 이 점에서 차별이나 학벌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계열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기업을 외부의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므로 부당한 내부거래이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에서는 특정 기업이 차별이라는 기업집단을 배경으로 경쟁한다는 것이 문제라면, 후자에서는 특정인이 학벌이라는 집단을 배경으로 경쟁하느냐가 문제이다. 단위나 개체가 기업이라는 조직인가 개인인가의

13) 이런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이윤 등의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다른 사업자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자의 숫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You, 2012).

차이는 있지만, 개체와 이 개체가 속한 집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미사상이 제시하는 개인이나 개체를 단위로 생각하고 이들의 외적인 관계에 경쟁과 공정성의 기준을 부과한다. 그렇지만 경쟁의 단위가 여럿이 되면, 외부와 내부의 구분과 공정성의 기준도 여럿이 된다. 개별기업의 외부이지만 기업집단의 내부의 경쟁, 거래, 관계에 대한 공정성 판정이 관건이다. 하도급관계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쟁과 경쟁의 조건이 존재한다면, 외적인 관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체나 개인에게 내면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원자라고 보아 그것의 내부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공정성이 내면화되어 행동의 방향을 어느 정도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업과 개인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경제학은 기업을 일인생산자와 동일시해 대부분의 기업이 조직이라는 점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이나 공정성이 개체나 개인들 사이의 외적인 관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경쟁은 기업의 외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개인들로 구성된 기업의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내부의 경쟁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외부의 경쟁보다 규격화되거나 표준화되어 인사고과 등의 기준으로 나타난다.

경쟁의 단위나 수준이 중층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재벌은 경제학에서 흔히 다루는 독과점과 구분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과점은 외부와 내부가 분명한 개별기업들과 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특정 산업에서 기업의 숫자와 시장점유율로 규정된다. 여기서 시장은 기업의 외부로 규정되어 기업과 시장의 구분도 명확하다. 이에 비해 재벌의 계열기업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관계들을 근거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재벌의 계열기업들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기업이면서도 부분적으로 서로에게 시장을 제공한다. 일감몰아주기는 내부시장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재벌은 커다란 기업이면서 동시에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재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분법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수출경쟁에 공식적인 조직이외에 비공식적인 조직이 함께 동원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공식적인 조직은 기업 내의 직위나 직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이다. 이에 비해 지연, 혈연, 학연 혹은 그것들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족보, 향우회, 동창회에 이에 근거한 인척관계나 선후배관계가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한국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등장하는 경쟁이 그렇듯이, 수출경쟁에서도 이런 비공식조직이 공식적인 조직과 결합되어 있다.

영미사상이나 경제학이 상정하는 경쟁의 공정성은 이런 비공식조직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경쟁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조직이론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에 비공식적인 조직이 등장한다는 것이 정설이다(Scott, 1998).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비공식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지연, 혈연, 학연이러는데 차이가 있다. 은행의 용자가 해당 기업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에 의존한다면, 경쟁의 공정성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은 기업에 대한 선생이자 시험관으로 기능했다(World Bank, 1993). 이들은 매년 수출목표에 따라 기업총수들에게 표창장을 주었고 투자자금도 배분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국의 수출경쟁은 통상적인 시장의 경쟁과 입시경쟁의 복합이었다. 수출을 목표로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목표나 기준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정

해져 시달되고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고 심판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입시경쟁과 비슷하다. 심지어 법원의 심판과 비슷한 점도 있다. 여기서 입시경쟁이 우리 사회의 교육부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수출경쟁에서는 소위 “과당경쟁”이나 “과열경쟁”이라는 한국적인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기득권이나 독점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드높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에는 특정 시점에서 결과나 실적을 놓고 경쟁이 몰려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70년대의 수출경쟁, 기업들 사이의 해외수주경쟁, 그리고 입시경쟁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경제학은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과당경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시장의 가격기구가 적정한 균형의 수준을 낳기 때문에 과당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소비”나 “가수요”뿐만 아니라 과당경쟁도 엄연한 현실의 문제이다.<sup>14)</sup> 우리 스스로 경쟁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당경쟁은 소극적인 공정성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소극적인 기준으로 제거할 수 없는 문제가 한국사회의 경쟁에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서 과당경쟁이 현실인가?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한국인에게서 언제나 서양인이나 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걸린 몫은 단순히 보수로 환산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경쟁은 한 개인이 자신이 생산하거나 소유한 물건을 놓고 경쟁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 가족, 친구, 소속 집단, 추종하는 지도자의 권위 등이 걸려 있어 필사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에게서 자신의 관계들과 소속 집단이 내면화 혹은 체화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경쟁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과 소속된 집단의 경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관계와 집단이 사회적 연결망이나 사회자본의 수준을 넘어서 한국인의 존재를 규정한다. 적어도 70년대 수출에서 나타난 경쟁은 통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주변까지 걸려 있는 필사적인 경쟁이었고, 전쟁이었다. 이 점에서 수출경쟁은 북한을 의식한 남한의 군비경쟁과 비슷하다.

이는 경제학이 말하는 완전경쟁은 물론이고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으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경제학의 개념들은 기업의 숫자와 제품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며, 방법론적인 개인주의에 따라 개인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간주하며, 기업을 일인 생산자로 취급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 기업의 내부, 즉 기업의 내부구성이나 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며, 경쟁이나 독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반면 한국경제사회의 경쟁을 논할 때는 기업과 인간의 내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과도한 경쟁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인격과 자긍심을 파괴할 수 있다. 과열된 경쟁은 좋은 결과, 평가, 지위나 소득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승리자에게조차 불행을 안길 수 있다. 필사적인 경쟁은 노동이나 공부 그리고 삶의 내적인 동기를 앗아, 활동을 순전한 노력과 고통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이나 창조성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Deci, 1971; Csikszentmihalyi, 1999; Iyengar & Lepper, 1999; Bénabou & Tirole, 2003).

이것이 한국사회의 경쟁주의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

14) 80-90년대에 한국의 신문을 장식했던 “과소비”나 “가수요”도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이나 시장의 가격기구를 경시하는 생각들이다. 이것은 경제학이론과 한국경제사회의 일상생활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과당경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된다. 친목을 위한 운동경기가 흔히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는 경쟁으로 바뀌는 일은 참석자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인가 어른들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어른들로는 경쟁, 특히 교육경쟁의 승리자들이 많은 학교 운동회에서 이런 “철없는” 일이 흔하다.

까지 봉건적인 독점이나 각종 집단에 근거한 기득권 등이 경쟁을 목표로 삼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지만 독점이나 기득권만큼이나 경쟁제일주의도 경계의 대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경쟁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균등, 규칙준수, 객관적인 평가로 규정되는 형식적인 차원의 공정성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사회정의나 인간행복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못한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입시경쟁도 비슷하다.

적극적인 의미의 공정성은 어떤 부문에서는 독점을 해체시켜 경쟁을 유도해야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공정성의 기준을 개인차원이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전체 수준에서 설정하고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상당기간을 두고 고안할 필요도 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집중되는 경쟁이나 절차적인 합리성은 다른 시점에서의 독점이나 방만이나 실질적인 비합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사회문제인 재벌의 경영권 상속(management succession)은 논리적으로는 간단하다. 경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거나 채용된 사원들 중에서 기업내부의 위계 속에서 평가를 통해 선발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영입되지도 않았다. 이 같이 재벌의 경영상속은 혈연이나 핏줄을 중시하므로 학벌과 같이 형식적인 수준의 공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같이 소극적인 차원의 공정성에서도 어긋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

경영상속은 북한의 정치지도자 상속이나 교회의 담임목사 상속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경쟁이나 암투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총수 집안 내부로 제한된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기업의 경영상속은 왕위계승과 비슷하다. 이에겐 가족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중시나 관용이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동양이 족장이나 봉건영주와 비슷한 전통적이거나 부권주의적인 지도자에 의존한다는 생각에 부합된다(Ouchi, 1980; Boisot & Child, 1996). 이는 경제학에서는 말하는 시장과 위계와 다른 제3의 지배구조로 볼 수 있다.

재벌집안의 핏줄이 탁월하거나 우성이라는 생각은 착각이거나 이념에 불과하다. 핏줄이 우성이 아니더라도 재벌총수의 자식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사원들보다 결과적으로 탁월해질 가능성은 높다. 기업 내의 교육과 승진과정에서 최대의 자원을 제공받는다. 또한 입사 후에도 다른 사원들보다 유일한 조건이나 정보나 연결망이 집중되어 있는 요직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는다. 회사의 위계조직이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기회의 균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기회제공의 차등이 누적되면 실제로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를 낳는다.

여기서도 사원의 공개채용이 표방하는 공정성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 3. 학교와 시험장의 공정성

입시경쟁과 학벌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와 교육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홍 훈, 2005). 한국의 입시경쟁은 기회의 균등과 절차상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다.<sup>15)</sup> 이 점에서 입시경쟁은 한국사회의 어떤 다른 종류의 경쟁에게도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15) 전통적인 경제학과 정의나 공정성은 잘 부합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균형을 통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상당부분 법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어느 법률동아리가 내세운 구호들 중 경제학에 등장하는 것은 별로 없다. 평등(equality), 자유(freedom), 평화(peace), 희망(hope), 자긍(dignity), 번영(prosperity), 정의(justice) 그 구호인데, 아마 번영 정도나 경제학에서 발견할 법하다. 이런 경제학의 편견을 이 글은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경제학의 이런 편견이 도저히 수용되지 힘들다. 또한 최근에는 행동경제학 등을 통해 경제학에서 공정성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입시경쟁과 관련해서도 기회균등, 규칙의 준수, 객관적인 평가에 만족하는 공정성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첫째, 칸트(I. Kant)가 주장한 바와 같이 특정인의 사회적 지위는 능력, 노력, 운에 달려 있다. 이 점은 경제학 입문서에 올라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입시경쟁에서는 학생 본인의 능력, 노력, 운도 아니고, 학생의 소득도 아닌,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사교육 등을 통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이 늘고, 이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이 요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격차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입시성적이 학생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라는 능력주의가 공정성의 기준이라면, 현재 한국의 입시는 이 기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경우 사교육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면에서 모든 응시자들을 평가하므로 절차적인 합리성이나 형식적인 공정성이 무력해지면서, 실질적인 의미의 기회균등이나 공정성은 더욱 멀러지고 있다. 부모의 재산이 학생의 입시성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 한국사회의 관용 역시 가족관계에 대한 중시나 관용과 통하는 것 같다.

과거 공적이나 실적이 누적되어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을 결정했다는 논리가 이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의 결과가 언제나 공적이나 실적을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상속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재산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힘들다.

여기서 시장경제가 존중하는 두 가지 가치인 기회균등과 사유재산제도가 충돌한다. 특히, 교육이 기회균등의 대표적인 장치라고 보면 이런 충돌은 심각하다.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신분이나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만,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미치는 불균등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비는 가정의 소득 중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며, 불황에도 별로 줄어들지 않는 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입시경쟁에 대한 가족의 개입은 단순히 소득수준의 차이를 넘어선다. 한국사회의 입시경쟁은 학생개인이 아니라 가정전체의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시경쟁은 경쟁의 단위로 볼 때 학생들이 아니라 가정들 사이의 경쟁(family feud)이다. 서양보다 동양과 한국에서 여전히 가족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이 이런 상황의 근원이다.

둘째, 한국의 대학들은 반영구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서열에 준하는 동창회 등 집단을 근거로 학벌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각 대학 졸업생들에 차등적으로 지위, 돈, 명예가 주어진다. 학연과 학벌은 노동시장과 각 부문에서 비공식적인 관계와 조직을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셈이다.

여기서 학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벌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각기 독점을 낳아 경쟁을 배제한다. 이 같이 한국사회에서 필사적인 경쟁으로 시작된 입시의 귀결은 집단적인 독점이다. 입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쟁의 시작이 아니라 독점의 시작이다. 이후에는 학벌집단 내부나 학벌집단사이에 제한적인 경쟁이 일어난다.

이 점에서 학벌은 재벌과 비슷하다. 재벌의 구성단위가 기업이라는 조직인데 비해, 학벌의 구성단위는 졸업생 개인이라는 차이를 접어둔다면, 문자 그대로 재벌((財閥)과 학벌(學閥) 사이에는 여러 유사성들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집단과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공유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혹은 비전문다각화는 학벌이 사회의 거의 모든 부

문에서 범용적인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과 닮았다. 재벌도 계열기업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듯이, 학벌도 소속원들에게 가해지는 외적인 충격을 둔화시킨다. 흔히 학벌을 유지하는 동창회가 등산이나 운동회 등 단체활동을 통해 회원들에 대한 복지단체나 자선단체로 기능하는 일도 이에 부합된다.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에 근거한 특권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능력과 혼동되어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된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집단적인 독점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분배는 부당하다. 나아가 학벌의 소유자가 이에 근거해 누리는 지위나 소득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누리는 차등적인 이윤도 부당하다.

이는 대학과 전공이 정해진 이후 대학에서 진행되는 공부나 노력이 학생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의 자리를 채우는 일에는 공정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이런 이유로 입시와 학벌로 이어지는 한국의 사회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시점에 집착하지 말고 동태적인 차원에서 경쟁과 독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학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고시 등의 공개경쟁이나 채용을 통해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선발된다고 해서 학력이나 학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공서나 대기업에 채용된 이후 내부조직이나 내부노동시장에서 업무기회나 승진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차등을 두지는 않지만, 기회를 주는 순서를 정해놓거나, 기회는 다 같이 주지만 평가에 있어 차등을 둘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위학벌의 소지자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고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자긍심에 차이를 낳아 결국 상위학벌 소지자와 하위학벌 소지자 사이에 원래 없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도 실제로 생겨난다. 이 경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고 누가 잘 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의 졸업자에게만 좋은 기회가 주는 방식을 취한다. 처음부터 요직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나 사원이 이에 해당된다. 총수의 아들은 이런 경우의 극단이다. 여기서도 공개시험으로 채용되었다는 정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공정성이 한계를 보인다.

또한 공적이나 실적이 능력, 노력, 운으로 결정된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가 누적되어 실제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능력은 장기적이고, 노력은 단기적이며, 운은 확률적이다. 가령, 집안, 지역이나 성별 혹은 자식 중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리고 학벌의 우열이 이런 차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 먼저 능력으로, 그 다음으로는 노력으로 돌린다. 반면 못하는 경우에는 운으로 돌리거나 적어도 노력의 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열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에는 운이나 노력으로, 그리고 못하는 경우에는 능력이나 적어도 노력의 부족으로 간주한다. 이런 차등적인 평가가 각자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결국 각자가 차등을 내면화해서 재생산하게 된다.

운이 좋은 것을 노력으로 간주하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력을 능력으로 간주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쌓일 수 있다. 반면 운이 나쁜 것을 노력의 부족으로 간주하면, 노력하지 않게 되고, 능력도 노력한 결과로 간주하면, 자긍심을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능력이나 노력, 운을 분리시켜 보지 말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한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동태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지 않고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도 공정성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령, 연예인들에게 방송에 먼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특권에 가깝다. 출연해서 아주 못하지 않는 한, 시청자들의 시선을 선점하게 된다. 먼저 본 연예인들에 시청자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의외로 기업의 상품이든 연예인들의 출연이든 시장이든 화면이든 선점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상품이나 사람들은 이미 정당한 평가의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초기대안의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나, 행동경제학은 이를 강조한다. 처음 본 사람, 처음 먹은 음식, 처음 본 산천경계, 먼저 주어지는 대안, 협상의 출발점, 이미 존재하는 법적인 해석, 이미 몸담고 있는 문화 등이 모두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Sunstein, 2002; Sunstein & Thaler, 2003; Thaler & Sunstein, 2008).

셋째, 경쟁의 절차에 집착해 경쟁의 내용이 경시되고 있다. 입시교육과 입시경쟁은 학생들을 경쟁을 통해 선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이나 선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부나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으로 가지고 경쟁하고 선별하는지는 중요하다. 한국에서 입시교육의 내용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입시교육은 창조적인 사고와 무관하게 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토론능력인데 영어단어암기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집착은 기준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매장시키는 경향을 안고 있다. 미리 알리고 이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어떤 기준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인지와 학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 입시의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아이들은 망가질 수 있다. 다만, 공정하게 망가질 뿐이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시장과 시험장에서는 경쟁과 통약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과 같이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나온다.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원리상 시장의 가격과 시험장의 점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시험장에는 미리부터 객관적으로 주어진 평가의 잣대나 기준이 존재하는데 비해, 시장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여러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각자 자기의 잣대로 재화나 생산요소들을 평가하며, 이것이 모여 시장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장의 가격결정에는 상당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비해 시험장에는 미리부터 경기의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했고 모두 알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 시장에서 재화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결정된다면, 시험장에서 평가의 기준은 맞느냐 틀리느냐로 결정된다. 승마에 대한 경기장의 평가는 ‘말춤’에 대한 시장의 평가보다 불확실성이 적다.

물론 시장의 가격도 소비자들의 선호뿐만 아니라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업들이 조합이나 담합 혹은 독과점을 통해 협정가격이나 권장가격을 부과할 수도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호를 미리 선점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신제품이 아닌 경우 통상적인 가격이 부과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시장의 가격결정도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적다. 그렇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답안지에 대한 평가기준보다 시장에서 상품, 특히 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힘들다.

시장과 시험장이 모두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의 평가가 다양성을 지니는 대신 불확실하다면, 시험장의 평가는 객관적이지만 획일적이다. 만약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면, 시장의 평가에서 다양성보다 불확실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시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획일성보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발견하는 경향과 통한다. 이와 반대로 가면, 시장에서 다양성을, 시험장에서 획일성을 발견하고, 시험장보다 시장에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시장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은 시험장의 경쟁과 그 결과 나온 점수보다 시장의 경쟁과 그 결과로 나온 가격을 신뢰한다. 이와 달리 한국사회는 적어도 최근까지 시장보다 시험장을 더 믿는 것 같다. 적어도 시장이 시험보다 효율성일 수는 있으나 적어도 공정성에 있어서는 시장보다 시험장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시험은 학교와 입시장, 고시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리 주어진 객관적인 기준을 신뢰한다는 점에서는 인가, 허가, 자격증, 등급부여도 시험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시장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허용하지만 경쟁의 목표나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자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기간 동안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내수시장이 견고하지 않았고 내수시장의 평가도 확고하지 못했다. 대신에 외부로부터 부과된 목표나 기준을 놓고 경쟁했다. 수출목표나 국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자격증도 이와 비슷하다. 건설회사의 도급순위 등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경쟁이나 경쟁의 결과가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신뢰한다.

요약하면 한국의 입시경쟁은 기회균등, 규칙준수, 객관적인 평가를 지고의 가치로 삼아 실질적인 차원의 기회균등이나 평가기준의 내용을 등한시해 왔다. 더구나 이런 형식적인 공정성에 근거해 입시경쟁이 낳는 독점은 정당화된다. 입시경쟁을 통해 생긴 독점이 학벌이다. 학벌의 과거와 외견은 경쟁이지만 그것의 내용과 현재는 독점이다.

나아가 입시경쟁은 필사적인 과당경쟁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의 입시경쟁은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열증을 가져오며 일부 학생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평가가 공정하더라도, 이런 평가는 정의롭거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넓게 보면, 한국사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나 규칙과 실질적인 내용이나 관습이 충돌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절차나 규칙이 서양에서 수입되거나 외부에서 부과된다면, 내용이나 관습은 한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에 가깝다. 전자가 후자를 토양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공존이나 결합은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를 실제로 제약하지만, 많은 경우 전자가 형식에 그쳐 후자를 정당화해 주기도 한다.

입시경쟁과 이에 수반된 절차적인 합리성이나 공정성은 전자에 가깝고, 이것이 후자와 결합되어 학벌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대한 집착은 서양의 경제사회보다 한국의 경제사회에서 보다 커다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나 공청회에서는 여론수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정해진 결론을 통과시켜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는 또 다른 예이다. 정부의 각종 출연기관들도 겉모습과 달리 정부의 부속기관인 경우가 많다.

대학입시도 그렇지만 사법고시나 공무원시험 등 공개채용시험이 내세우는 절차적인 합리성도 채용당시의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채용 이후 은퇴하기 전까지 누적되는 승진, 전직, 퇴사 등 전체 과정을 놓치고 있다. 흔히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되더라도 이후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한 차별이나 배제로 인해 능력과 노력과 무관하게 지위나 소득이 결정되는 불공정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 내부노동시장이나 조직의 위계 속에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 이로부터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조직내부의 인사고과의 공정성을 도외시하는

편파성을 낳을 수 있다는 논리를 도출할 수 있다.

만약 신규채용시의 공정성이 내부노동시장의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독립적이라면, 후자의 공정성과 관계없이 전자의 공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공정성이 후자의 공정성을 몰아내거나 대체하거나, 심지어 후자의 비공정성을 은폐할 수 있다.<sup>16)</sup> 한국의 관료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내부에 여러 차별의 관행을 안고 있으면서도, 공개채용만을 부각시켜 모든 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자를 분리시켜 전자의 공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이런 이중구조나 분리현상(decoupling)으로 인해 한국에서 절차상의 공정성이 내용이나 실체의 부당성을 은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공정성의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인증과 자격증의 공정성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기준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근대사회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의존해 왔다. 시장의 가격, 선거의 투표, 시험점수, 제품에 대한 분류와 등급 부여, 음악경연의 심사나 운동경기의 판정 등이 그런 예이다. 이들은 모두 통약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다.

입시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몇 가지 잘 정의된 수량적 속성이나 구성요소들, 즉, 국어, 영어 수학으로 분해 한 후, 이 구성요소들에 대해 기록된 점수들을 합산한다. 그리고 이런 연속적인 점수들을 덜 연속적인 등수로 바꾸어 학생들의 학교와 전공이 결정된다. 통약에는 표준화, 수량화, 객관성, 비인격성, 합리성, 기회균등 그리고 포함 등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고시나 가격체계 모두에 적용된다.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은 기회균등이나 포함으로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를 공통의 장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거래할 수 있고, 과거시험과 달리 대학입시와 고시에는 반상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품화나 세계화와 부합된다.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의 경우 입학시험과 같은 시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정부가 주도해 인가, 허가, 자격증, 등급부여 등의 관행도 흔하다. 사실 한국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선발, 고용, 증명 등에 대한 규제나 기준을 부과해 왔다. 이런 표준화된 절차에서 한국인들은 획일정보다는 객관성을 확인해 왔다. 대학의 각종 학위증서, 한때 유행했던 'KS 마크'를 위시해 상표에 대한 등급, 모범식당이나 호텔의 등급, 모범택시,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자격증, 공무원, 판검사, 기자나 교수들의 임용자격 등이 그런 예이다. 각 대학이 내세우는 표준화되고 수량화된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제도는 최근의 예이다.

이런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척도가 환영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 자연이나 혈연 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연이나 학벌이 자연이나 혈연에 비해 정당화되는 이유도 시험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학뿐만 아니라 정

16) 최근에 대학에 도입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라는 수량적인 지표도 이와 같은 예이다. 외국의 유명대학에서 보다 더 상세한 점수화나 수량화, 그리고 외국의 유명학자들도 혀를 찰 정도의 SCI나 SSCI에 대한 집착은 교수들의 연구방향과 질을 상당히 뒤떨어놓고 있다.

부기관이나 대기업 등 대부분의 중요한 조직들은 이런 종류의 획일적이지만 수량화되고 객관적인 기준들을 채용이나 인사고과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취미나 기호(여름의 인기방화)나 미적인 판단(성형수술) 등에 있어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다양성에 있어 떨어진다는 생각에도 부합된다.

이런 표준화된 인증이 객관적이면서 공신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런 인증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했다. 거래나 계약과 연관 지으면, 정부가 거래대상의 품질을 보장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기여했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인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증은 시장에서 확인될 수도 있는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판단하므로 부분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위축시킨다. 이런 이유로 프리드만은 의과대학의 존재도 비판하는 등 허가나 인증에 극단적으로 반대했다(Friedman, 1982). 그의 논리는 이런 인증이나 자격증이 시장의 진정한 경쟁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들은 개업해서 변론, 진료, 경리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증, 특히 한국의 자격증은 이런 경쟁을 상당 부분 배제하므로 독점과 기득권을 낳는다.

이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사법고시는 더 일찍 폐지되었어야 한다. 대학졸업장, 그것도 서열이 다른 여러 대학의 졸업장이라는 인증서를 주는 입시경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대학졸업장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와 달리 특정 업종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범용적이다. 이것이 특정 산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보다 보다 경쟁을 조장하는지 아니면 독점을 강화시키는지의 논의의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는 그와 반대였던 것 같다.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편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공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다.<sup>17)</sup> 그리고 현재도 이런 합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시장의 경쟁에 대해 효율성 혹은 적어도 공정성에 있어 크게 신뢰하지 않든지, 현실경제에서 협회 등을 통한 담합이 쉽게 이루어져 경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학시험과 사법고시가 모두 치열한 경쟁을 근거로 한 독점이라는 것이 프리드만으로부터 벗어난다. 또한 재화와 사람에 대한 인증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재화의 기능은 주어져 있는데 비해, 노동력은 가변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판정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반면 대학졸업장으로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판정하는 일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시점에서 노동력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그것의 잠재력을 억압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특정 사회구성원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심지어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인증(認證)을 받지 못하면 낙인(烙印)이 되는 셈이다. 나아가 이런 환원주의적인 평가는 '창조성, 성장, 독립성, 개별성, 융통성, 개발능력이나 놀이'를 억제시킨다(Anderson, 1993, pp. 49-50, 55).

모든 종류의 표준화와 통약에는 기준의 획일성이라는 위험이 수반되어 있다. 인간의 속성이나 능력이 다양한데 이를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올바른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수능점수와 같은 점수나 시장의 임금이나 소득이 비슷하다. 입시생이든 고시생이든 사원이든 표준화된 기준이 등장하면, 보다 쉽게 포착되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지

17) 한 때 정부의 인증서와 자격증이 창궐해, 20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화제의 인물로 세인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여러 자격증들 사이에 우열과 집합관계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령,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면 당연히 계리사자격증을 갖는 것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않는 능력을 스스로 억압하게 된다. 또한 눈에 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눈에 잘 띄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근거 없이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Holmstrom & Milgrom, 1991).

그러므로 만약 각자의 자아성취, 생산성, 기술혁신 등의 창조성,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다양한 차원의 능력이 요구된다면, 하나의 척도로 모든 능력을 환원하는 것은 반드시 공정하지 않다. 또한 일견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준이 특정 시점에서 잘못된 평가를 낳을 수도 있지만 사회 여러 부분들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이런 평가가 활동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진정한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에 집착하면서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앞서 대학입시는 치열하지만 대학교육은 치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진학 뿐만 아니라 관직이나 기업의 간부직 등 자리나 지위가 걸려 있으면 이런 일은 흔하다. 또한 시험, 선거, 임명 혹은 혁명이나 쿠데타 등 선발의 방식과 독립적으로 이런 일은 흔하다. 관직을 위시해 특정 직위의 업무에 대해 중간평가나 사후평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의 선출은 치열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나 탄핵은 예외적이다.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선발, 선출, 임명에 압도적으로 많은 무게가 걸리게 된다. 선발과정의 공정성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일단 선발되고 나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사라진다.

## 5. 한국사회의 특징

우리가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공정성의 기준은 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원에서 설정되었다. 그런데 동양사회와 한국사회가 집단적이고 사회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Markus & Kitayama, 1991; Markus & Schwartz, 2010; Triandis, 1989).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차원에서 설정된 공정성의 잣대가 부적절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연, 혈연, 학연 및 학벌에 근거한 사회관계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에선 일상적인 거래관계나 하도급관계, 고용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타인과의 차이를 의식하는 사회적인 비교나 상대적인 위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사이에 과도한 차이로부터 고통이나 불행을 느낀다(Festinger, 1954; Frank, 1985). 그러나 동양이나 한국사회의 장기적이고 두터운 관계는 이보다 더 근원적이다.

한국의 인간관계는 장기적이며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을 넘나들며 기능한다. 또한 서양의 인간관계와 달리 하나의 인간관계가 다른 인간관계나 집단에 의해 뒷받침되고 중첩된다는 점에서 두텁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는 교환의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매 시점의 개별적인 교환행위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공정성을 따질 수 없다.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매 시점마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선물교환은 이에 가깝다(Akerlof, 1982). 이 경우 시점별로 따지면 동등한 가치가 서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합해 보면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어 등가교환이 달성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으로 경제학이 강조해온 경제인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이나 실험경제학 등이 강조하는 호혜적인 인간이 이에 가깝다(Fehr & Schmidt, 1999; Bowles & Gintis, 2002; Smith, 2010).

둘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관계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한다. 사회관계나 인간관계는 인적인 관계와 물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물적인 관계를 위해 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경우가 한국사회에 적지 않다. 이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물건과 관련된 잉여의 적절한 분배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착취에 대한 방지도 필요하다(홍 훈, 2011).

개인주의 사회에서와 달리 관계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의 격차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적주의나 능력주의가 악화되고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보다 평등한 분배로 가게 된다. 흔히 한국사회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계와 집단에 의존적인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개인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자아나 집단적인 자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 사이의 경쟁이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경쟁이나 이들이 속한 집단의 경쟁이 된다. 가령, 하나의 직책을 놓고 서로 다른 학교를 나온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경우, 각 개인의 배후에 있는 모든 관계들과 집단이 동원될 수 있다.<sup>18)</sup> 한국의 선거에서도 모든 지연, 혈연, 학연이 동원된다.

지연, 혈연, 학연이 개입된 경쟁과 그 결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개인차원에서 설정된 잣대로 공정성여부를 가늠하거나 실현하기 힘들다(홍 훈, 1996, 1997). 갑과 을이 모두 자신이 지닌 인맥과 소속집단을 동원해 경쟁하는 경우, 갑과 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관계나 집단의 자원과 힘이 경쟁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경쟁의 주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아니므로 부당한 경쟁이다.

이와 다른 경우로 갑은 자신의 관계나 소속집단을 총동원하는데 비해 경쟁상대인 을은 양심이나 도덕 혹은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경쟁이 된다. 이런 경쟁은 더욱 부당하다. 그렇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이런 경쟁들은 드물지도 않고 관리되지도 않는다. 한국인 스스로도 개인차원의 공정성을 스스로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가 쉽게 개인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경쟁과 공정성의 기준을 개인수준에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영미사상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이같이 경쟁의 주체나 단위가 문제된다. 사람들의 집단성이나 관계의존성을 해체할 수 없다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경쟁에 지연, 혈연, 학연이 개입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 혹은 차악은 공개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경쟁이라고 이를 선언하고 허용해야 한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경쟁을 억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위나 소득을 나누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자격증이나 인증서에 의존한 선발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자체를 획득하는데 인간관계나 집단의 힘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자격증은 부당한 경쟁들을 억제하고 손쉬운 선발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지닌 능력과 자격증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별도의 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연결망이나 사회자본 등을 들어 학벌도 개인의 자본이나 자산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연이나 학벌에 개인의 능력과 같은 차원에서 소유권을 부여하기에는 공공재와 같은 불가분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너무 크다. 어떤 학생이 특정 학교에 노력해서 입학하면서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과 소속 집단은 본인의 의사나 이익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프리드만을 위시한 경제학자의 논에 따르면, 모두가 완벽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합리적

18) 이런 이유로 교육배경(educational background)이나 배경이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미국사회에서 배경은 개인의 과거인데 비해, 한국에서 배경 혹은 소위 “뿌”는 한 개인을 뒷받침하는 관계들과 소속 집단을 의미한다.

인 선택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사회에서는 대학진학이 학벌을 얻어 부당한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든 학생과 부모에게 공표하고 이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선택토록 허용해야만, 시장원리에 부합된다. 그러나 설령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선택과 경쟁이 공정할 뿐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학에 제시하는 공정성의 기준은 개인차원에 붙들려 사회전체의 차원을 도외시키고 있다.

더구나 입시경쟁자체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부공정한 경쟁일 수 있다. 부공정성의 근거는 단순히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한국의 입시경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관계되는 가족전체의 관심사이고 가족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에 가깝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학생과 혼연일체(渾然一體)로 입시준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경쟁의 주체나 단위도 반드시 개인이 아님을 말해준다.<sup>19)</sup>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과 어머니 중 누가 주인(principal)이고 대리인(agent)이 불분명하다는데서 드러난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인 자식을 위해 어머니가 입시나 학원 정보를 얻어오는 등 노력한다. 그런데 거꾸로 학생자신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의 한을 풀어주거나 부모의 바람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주인이고, 부모가 아니라 학생이 대리인이다.

이런 생각을 연장하면, 재벌기업은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등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나 ‘일감 몰아주기’도 부당하다. 이 점에서 재벌이나 학벌이나 마찬가지로 이 같이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단위가 달라지면, 공정성의 기준도 유지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경쟁의 주체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개인과 개인, 관계와 관계, 집단과 집단의 경쟁이라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인과 관계, 개인과 집단, 혹은 관계와 집단의 경쟁은 처음부터 부당하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최근 서양인들도 분배의 공정성을 각자가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비판적인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에서는 현실의 인간이나 경제인이 이미 공정성을 행위에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세운다. 대표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해 무조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한 이유에 따라 정당성여부가 달라졌다(Kahneman et al., 1986a). 공장의 출하가격이 올라서 대리점에서 가격을 인상한 경우는 정당하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 법으로 허용되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래, 가격, 임금 등을 거래당사자가 거부했다. 물론 공정성 자체를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기적으로 해석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이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Loewenstein et al., 1993). 무엇보다 신고전학파는 이들이 경제나 경제학을 몰라서 이 같이 판단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자들은 교육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에서도 사람들이 형평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분배를 수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정벌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게임에서는 제안자가 주어진 액수의 돈 중 얼마를 응답자에게 줄지를 결정해서 제안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이에 응하면 제안한 대로 나누고, 거부하면 누구도 아무런 보수를 얻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응답자는 전체 액수의 10%, 심지어 1%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20%이하의 제안은 거의

19) 이 점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백인 학생들이 동양계 학생들과의 학업경쟁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은 진실을 담고 있다. 백인 학생은 개인으로, 동양계 학생은 부모와의 ‘연합군’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제안이 40%-50% 정도였다(Fehr & Schmidt, 1999, p. 826).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협상이나 흥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이 어디서나 개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th et al., 1991).

#### 6. 한국경제사회에서 공정성의 기준

지금까지 시장과 시험장을 통해서본 한국경제사회에서 경쟁과 공정성의 기준을 성정하는 데는 소득과 재산의 차이, 평가기준의 내용, 결과가 아닌 과정, 장의 성격, 경쟁의 단위, 개인과 사회의 간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 (1) 소득과 재산의 차이

주지하듯이 영미사상은 시장이나 시험장에서 경쟁주체들의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를 간과하고 오로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만을 부각시킨다. 시장은 신분, 인종, 종교,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거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재화시장에서 서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비자가 지니는 구매력의 차이나 자금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력차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양형에서 권문세가나 재벌총수와 무명인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의존하는 것은 타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며, 경쟁의 규칙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평가의 원리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기회의 균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공정성이 반드시 실질적인 공정성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평가기준의 내용

평가기준에 대한 공시와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을 문제로 삼을 뿐 기준의 내용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공정할 수는 있으나 경제사회의 움직임에 왜곡을 낳을 수 있다. 평가기준 자체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갖든 평가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쟁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하므로 평가의 기준이 지닌 내용도 중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가격 등과 같이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역마다 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표준화되고 수량화된 지표로 통해 점수화하는 경향도 억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객관성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별로 필요도 없는 능력을 키우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평등성이나 기회균등을 내포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람이나 재화 등 사물의 모든 측면들을 하나의 잣대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통약이나 숫자에 대한 맹신이 위험을 안고 있다. 시장경제나 시장주의도 모든 것으로 가격이나 화폐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 (3) 결과와 과정

한 시점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동태적으로 과정전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시나 공개채용시험은 절차적인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조직내부에서 재생산되는 기회의 불평등이나 평가의 편파성을 함께 고려하면, 그것의 제한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교육경쟁은 절차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자부하지만 학벌이라는 독점적인 집단을 낳는다. 입시경쟁자체만을 보면, 이것이 낳은 독점을 간과하게 된다.



#### (4) 장의 성격

모든 장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의 방식이 제대로 규정되어야 하고, 경쟁이 억제되거나 아예 장이 서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시험이나 표준화된 지표, 그리고 인증서로 걸러내려는 경향이 있다. 입시나 시험, 그리고 점수나 등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맹신도 학교가 내포한 평등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5) 경쟁의 단위

보수적인 사회과학은 교환과 계약, 그리고 경쟁의 주체를 모두 개인을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관계와 집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을 단위로 삼는 공정성의 기준이 현실을 설명하거나 평가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외견상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과 집단의 경쟁이거나 심지어 집단과 개인의 경쟁인 경우가 흔하다. 외양에 집착해 개인들을 기준으로 공정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 (6)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비공식적인 조직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가변적이 된다. 문제는 공식적인 조직만을 고려할 때 기회의 균등이나 경쟁의 공정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공식적인 조직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공식적인 조직을 감안해야 한다..

#### (7) 개인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정성

보수적인 사회과학은 개인차원에 집착하므로 사회차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 속에서는 개인차원의 합리성이 사회차원의 합리성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차원의 공정성이 사회차원의 공정성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입시경쟁에서 각 개인이 절차적인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자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홍 훈 (1992) 근대경제학내의 자유주의, 『사회비평』, 8, 51-75쪽
- 홍 훈 (1994) 경제민주화의 사상적 배경, 『연세경영연구』, 31, 별책, 13-77쪽
- 홍 훈 (1996)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특수성, 『연세경영연구』, 32:2, 별책, 183-192쪽
- 홍 훈 (1997) 한국경제의 민주화, 『연세경영연구』, 33:2, 별책, 243-253쪽
- 홍 훈 (1998) 현대적인 기업이론과 맑스적인 관점, 『산업노동연구』, 34:1, 229-254쪽
- 홍 훈 (1999) 『한국 자본주의의 실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홍 훈 (2005) 학벌학력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학보』, 12:1, 409-437쪽
- 홍 훈 (2009) 『경제학과 자유주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 훈 (2010) 점수와 가격, 입시경쟁과 시장의 경쟁, 졸업장과 상표,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서울: 메이데이, 111-139쪽
- 홍 훈 (2011) 마르크스의 착취관계와 소비 및 동양의 인간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 8:1, 12-39쪽
- 홍 훈 (2012) 한국경제사회, 한국인, 한국교육: 한국형 모델의 이론적인 구성요소들, 4장, 『한국형 모델』, 유정식 • 홍 훈 • 장종익 • 박종현 공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Akerlof, G. A. (1982)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4, pp. 543-569
- Anderson, E. (1993) *Value in Ethics and Economic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Ayres, I. & R. Gertner (1989) Filling gaps in incomplete contracts: an economic theory of default rules, *Yale Law Journal*, 99:87, pp. 87-130
- Bass, B. 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8:3, pp. 19-31
- Boisot, M. & J. Child (1996) From Fiefs to Clans and Network Capitalism: Explaining China's Emerging Economic Order,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 41, pp. 600-628
- Bowles, S. & H. Gintis (2002) Home reciprocans, *Nature*, 415:10, pp. 125-128
- Carruthers, B. G. & W. N. Espeland (1991) Accounting for Rationality: Double-Entry Bookkeeping and the Rhetoric of Economic Ration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 pp. 31-69
- Csikszentmihalyi, M. (1999) If We Are So Rich, Why Aren't We Happy?, *American Psychologist*, 54:10, pp. 821-827
- Deci, E.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1, pp. 105-115
- Dworkin, R. (1980) Is Wealth A Value?, *Journal of Legal Studies*, 9:2, pp. 191-226
- Edgeworth, F. Y. (1881) *Mathematical Psychics*, London: C. Kegan Paul
- Espeland, W. N. & M. L. Stevens (1998) Commensuration as a Social Pro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 313-43
- Fehr, E. & K. Schmidt (1999)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3, pp. 817-868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pp. 117 - 140
- Frank, R. (1985) The Demand for Unobservable and Other Nonpositional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pp. 101-116
- Frank, R. (2000) Why is Cost-Benefit Analysis so Controversial?, *Journal of Legal Studies*, 29:2, pp. 913-930
- Friedman, M. (1982) *Capitalism and Freedom*, Phoenix Book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neezy, U. & A. Rustichini (2000) A Fine is a Price, *Journal of Legal Studies*, 29:1, pp. 1-15
- Hofstede, G. & M. H. Bond (1988)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4, pp. 5-21
- Holmstrom, B. & P. Milgrom (1991) Multi-Task Principle-Agent Analysi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7, pp. 24-52.
- Kahneman, D., J. Knetsch & R. Thaler (1986a) Fairness as a constraint on profit seeking, *American Economic Review*, 76:4, pp. 728-741
- Kahneman, D., J. Knetsch & R. Thaler (1986b) Fairness and the assumptions of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59, pp. S285-230
- Kelman, M., Y. Rottenstreich & A. Tversky (1996) Context-Independence in Legal Decision

- Making, *Journal of Legal Studies*, 25:2, pp. 287-318
- Lewis, J. (1975) *Max Weber and value free sociology: a Marxist critique*,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Loewenstein, G., S. Issacharoff, C. Camerer & L. Babcock (1993) Self-serving Assessments of Fairness and Pretrial Bargaining, *Journal of Legal Studies*, 22:1, pp. 135-159
- Maine, T. S. (1861) *Ancient Law*, London: J. M. Dent & Sons
- Mark, K, R. Yuval & A. Tversky (1996) Context-dependence in leg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Legal Studies*, 25:2, pp. 287-318
- Markus, H.-R. & S. Kitayama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pp. 224-253
- Markus, H.-R. & B. Schwartz (2010) Does Choice Mean Freedom and Well-Be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pp. 344-355
- Nelson, R. R. & S. G. Winter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Nisbett, R., K. Peng, I. Choi & A. Norenzayan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pp. 291-310
- Nonaka, I. (2007)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pp. 162-171
- Ouchi, W. G. (1980)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 pp. 129-141
- Posner, R. (2004) Law and Economics in Common-Law, Civil-Law, and Developing Nations, *Ratio Juris*, 17:1, pp. 66-79
- Roth, A., V. Prasniker, M. Okuno-Fujiwara & S. Zamir (1991) Bargaining and Market Behavior in Jerusalem, Ljubljana, Pittsburgh, and Tokyo: An Experimenta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81:5, pp. 1068-1095
- Rousseau, D. (1989) Psychological and Implied Contracts in Organizations, *Employe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Journal*, 2:2, pp. 121-139
- Sandel, M. (1998) *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 Scott, R. (1998) *Organizations: Rational, Open, Natural Systems*, New Jersey: Prentice-Hill
- Sen, A. K. (2000) The Discipline of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XXIX, pp. 931-952
- Shamir, B., R. J. House & M. B. Arthur (1993) The Motivational Effects of Charismatic Leadership: A Self-Concept Based Theory, *Organizational Science*, 4:4, pp. 577-594
- Simonson, I. & A. Tversky (1992) Choice in Context: Tradeoff Contrast and Extremeness Aver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3, pp. 281-295
- Smith, V. (2010) What would Adam Smith think?,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3, pp. 83-86
- Sunstein, C. (2001a) Cost-benefit default principles, *Michigan Law Review*, 99:165, pp. 1651-1723
- Sunstein, C. (2001b) Human behavior and the law of work, *Virginia Law Review*, 87:2, pp. 205-276
- Sunstein, C. (2002) Switching the default rule,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107, pp. 106-134
- Sunstein, C. & R. Thaler (2003) Libertarian Paternalism Is Not an Oxymoron,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0:4, pp. 1159-1202
- Thaler, R. & C. Sunstein (2008) *Nud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irole, J. (1999) Incomplete Contracts: Where Do We Stand?, *Econometrica*, 67:4, pp. 741-781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pp. 506-520
- Tversky, A. & I. Simonson (1993) Context-dependent preferences, *Management Science*, 39:10, pp. 1179-1189
- Williamson, O. E. (2002) The Theory of the Firm as Governance Structure: From Choice to Contrac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3, pp. 171-195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ou, T. (2012)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Firm: A Process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Firm Performance, *Manuscript*